

# 한국연안방재학회 정관

제정 2014. 05. 16

개정 2015. 01. 19

개정 2017. 01. 17

개정 2021. 03. 31

개정 2023. 10. 19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안방재학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Coastal Disaster Prevention, 약어: KSCDP,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105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문의 융합적 기여를 통한 활발한 학문발전을 지향하며 관산학연이 공동참여하는 포괄적 의견교환의 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연안을 정비·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논문집, 연안방재에 관한 도서 출판
2. 연안방재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3. 연안방재에 관한 위탁 및 수탁 연구, 기술지도 및 협조, 자문, 평가
4. 연안방재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5. 연안방재에 관한 기준과 용어의 제정
6. 국내외 관련 제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연안방재에 대한 홍보

8. 연안방재정책에 대한 조사와 건의

9.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연구회를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본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원로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 한다.

1. 연안방재 및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며,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원로회원 등)** ① 원로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연안방재 기술향상과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만 65세 이상이며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하는 사람 또는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목적 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학생회원은 연안방재계통의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회의 회원인 교수 1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유학 등으로 장기간 학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정지를 신청한 경우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퇴회계를 제출한 경우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퇴회를 의결한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경우
4. 회원이 사망한 경우
5. 회원이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자가 된 경우

③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이 복권된다.

1. 회비체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한 경우
2. 제명된 회원의 복권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회비)** ① 입회비와 연회비는 본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본회의 종신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납부 후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30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변경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회장 :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현 회장의 재임 만료 1년 전에 직선제로 선출
2. 부회장 : 회장이 추천 후 총회 인준
3. 이사 :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출 후 총회의 인준
4.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 인준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취임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되면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임기 중 6개월 이상 회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

④ 임원의 행위가 부적절할 시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면 청원으로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발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원(회장 제외)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직무는 본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제18조(임원임기의 승계) 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기 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면 차기 회장 선출까지 부회장(운영규정에 제시된 부회장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을 말한다)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중 임기 도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잔여임기를 승계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1. 부회장 :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후 총회에서 추인
2. 이사 : 회장이 임명 후 총회에서 추인
3.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추인

##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안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학회 가입 정회원수의 100분의 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서명 청원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2항의 청원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 부회장(운영규정에 제시된 부회장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을 말한다)이 소집해야 한다.

④ 회장(제3항에 따른 경우 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인준 및 해임
3. 정관의 개정사항 인준
4. 그 밖에 중요 사항

**제21조(총회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10/100 또는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 의결은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④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운영규정에 제시된 부회장의 순서에 따름)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를 의장으로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운영, 회비 관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원 자격 상실과 복권에 관한 사항
5. 회장으로부터 제의된 사항
6. 회원의 입회 승인, 특별회원의 연회비 결정 등 회원 관리
7. 규정의 제정과 개정
8. 그 밖에 학회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 위임자를 제외한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장 원로회의

**제26조(원로회의의 구성 및 기능)** ① 원로회의는 학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원로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원로회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본회 운영 및 위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1. 본회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장으로부터 제의된 사항

④ 다음의 학회 위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1. 본회 명칭 변경
2. 본회 사무국 주소 변경
3. 다른 학회와의 연합
4. 그 밖에 본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항

**제27조(원로회의의 소집)** 원로회의는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기재하여 각 원로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8조(원로회의 의결)** ① 원로회의는 전체 원로회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원로회의 의결은 서면 위임자는 제외한 원로회의 출석 원로위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 제7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내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사무국장 임명)** 회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급의 사무국장을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1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무를 포함한 모든 사무국 운영을



책임진다.

**제32조(직원의 임면)** 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3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의 과실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5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 ③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④ 기본재산이 존재할 경우 목록을 별지에 열거한다.
- 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을 말하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 ⑥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 ⑦ 재산은 별도의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를 따른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본회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은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 각호의 서류를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는 아래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본회 시설의 유지운영
2. 전차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의 시행
3. 본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 지급 또는 본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9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자산귀속)**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10장 운영규정

**제43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3. 10. 19)부터 효력을 발생한다.